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아동학대 예방·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 설치 등 》

■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534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정 경 윤

목 차

I. 개요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3
II. 검토의견	4
1. 총괄적 검토	4
2. 주요 조문별 검토	15
가. 제명 및 목적·정의(안 제1장)	15
나.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안 제2장)	18
다. 위원회의 조사·청문회 및 결과보고서 작성(제3장)	26
라. 국가기관등의 이행실태 확인·점검(안 제4장)	38
마. 기타(보칙, 벌칙)	40

I. 개요

1. 제안정위

(1) 제 안 자 : 김선민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4. 12. 16.

(3) 회 부 일 : 2024. 12. 18.

2. 제안이유

2020년 10월 13일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아동이 세 차례 학대신고에도 불구하고 학대현장에서 구출되지 못하고 보호자의 지속적인 학대 끝에 사망하였음. 같은 해 6월 천안에서는 보호자가 아동을 약 7시간 동안 여행용 트렁크가방에 가두는 잔혹한 행위로 사망케 한 사건이 있었음.

보건복지부의 『2023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무려 44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함. 가해자의 약 85%가 부모라는 점에서 은폐되기 쉬운 아동학대사망사건의 특성상, 언론이 주목한 일부 사건 외에 대부분의 아동학대사망사건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더불어, 해당 통계조차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 202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음.

현행법은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공적 조사체계를 두고 있지 않아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미흡했던 한계가 있음. 과거 몇몇 국회의원과 민간의 주도로 <이서현보고서(2014)>,

<은비보고서(2017)>를 작성하여 제도개선에 일부 기여했으나, 이 역시 조사체계의 제도화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유사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영국에서는 2003년 빅토리아 클림비라는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정부 주도로 전문가들이 2년여간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2004년 아동법」을 제정해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을 크게 변화시킨 바 있음.

이에 총리 산하에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설치해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법령 등의 개선방안과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아동보호체계를 개선하고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아동학대사망사건을 명확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아동학대 예방·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조사·분석을 통해 아동학대사망사건의 발생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을 수립·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한시적 기구로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3조).
- 다.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는 2018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아동학대사망사건 중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해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며, 이를 위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27조까지).
- 라.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는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제도·정책 등에 대한 개선, 책임 있는 국가기관등에 대한 시정, 아동학대 대응·아동보호 체계 관련 대책 수립 등 조치를 포함하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함(안 제28조).
- 마. 결과보고서에 따른 조치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이행계획 및 이행내역 등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며, 국회가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경우 보고서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29조).

Ⅱ.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 제정안은 아동학대 사망사건 조사·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사망사건 발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아동학대 예방·근절을 위한 정책 대응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6장, 3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아동학대 사망사건 조사·분석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3조(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의결)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의 겸직 및 정치활동금지)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5조(직원의 신분보장) 제17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4조(위원회의 업무)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의사의 공개) 제8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제1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4조(사무국의 설치) 제16조(사무국의 존속기간) 제18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3장 아동학대 사망사건 조사·분석 위원회의 조사 및 청문회	제1절 조사 제19조(조사의 개시) 제20조(조사의 방법) 제21조(고발 및 수사의뢰) 제2절 청문회 제22조(청문회의 실시) 제23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제24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제25조(증인 등의 선서) 제26조(증인등의 보호) 제27조(검증) 제3절 조사·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제28조(조사·분석 결과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장 국가기관등의 이행실태 확인·점검	제29조(이행실태 확인·점검 등)	
제5장 보칙	제30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제32조(자격사칭의 금지) 제34조(조사대상자등의 보호) 제36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제31조(비밀준수의무) 제33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35조(운송비·여비 등)
제6장 벌칙	제37조(벌칙)	제38조(과태료)

□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제1조 및 제2조)은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아동학대사망사건을 명확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아동학대 예방·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아동학대’, ‘아동학대관련 범죄’의 정의를 이 법에서도 사용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용어를 정의함.

제2장(제3조~제18조)은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아동학대사망사건을 조사·분석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함.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구성, 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 사무국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3장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의 조사 및 청문회’ 중 제1절(제19조~제21조)은 조사개시 및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의결로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조사방법으로 조사대상자·참고인에 대한 자료제출·출석요구, 현장 실지조사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조사결과에 따른 고발·수사의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2절(제22조~제27조)은 청문회에 관한 사항으로, 증인출석 등 요구,

증인출석 의무·선서, 증인보호, 검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3절(제28조)은 조사·분석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로 하여금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후 6개월 이내에 조사·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

제4장(제29조)은 국가기관등의 이행실태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6개월 이내에 그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후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보고받은 이행내역이나 이행상황이 미진할 경우 개선을 요구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고서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제5장(제30조~제36조)은 보칙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기관 등의 협조 의무, 비밀준수의무, 자격사청금지, 조사대상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6장(제37조 및 제38조)은 벌칙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직무상 비밀누설, 사청 등에 관하여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정하고, 법률 시행 전 위원회 설립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의 「2023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최종 학대 판단 건수는 2021년 37,605건으로 정점을 보이다 이후 감소하여 2023년 25,739건이며,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일정한 추세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2021년 40건, 2022년 50건, 2023년 44건임. 다만,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유관 기관 간 정보 연계 부족 등으로 실제보다 축소되었을 수 있다는 문제가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음¹⁾.

< 최근 5년간 아동학대 관련 일반 통계 >

(단위: 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신고건수	41,389	42,251	53,932	46,103	48,522
아동학대의심사례건수	38,380	38,929	52,083	44,531	45,771
아동학대 판단건수	30,045	30,905	37,605	27,971	25,739
아동학대 사망사건 발생건수	42	43	40	50	44

1) 아동학대의심사례건수: 아동학대 신고 건 중 동일 건 신고 등으로 바로 종결처리한 건 제외, 실제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한 건수

2) 아동학대 판단건수: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한 건수

3) 아동학대 사망사건 발생건수: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현황 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인지된 사건까지 포함된 건수

* 자료: 보건복지부(「2023 아동학대 주요통계」)

□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장기적인 트라우마도 남기게 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아동학대로 인한 가장 중대한 피해는 아동의 사망일 것임에도,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개별 사건이 국민적 관심 대상이 된 후 사후적인 대책 마련 수준에 그칠 뿐 이에 대한 공적 조사 체계가 미흡하며, 사건의 원인과 문제를 충분히 진단한 후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사망사건 방지체계의 마련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²⁾.

1)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김선민의원실 보도자료: 2020년 인천에서 발생한 소위 라면형제 방임 및 화재 사망사건의 경우 친모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벌을 받았음에도 행복 e음시스템에는 ‘일반 사망’으로 입력되어 있었고, 관할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통보받지 못해 해당 지자체가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 인지하지 못한 사례들이 지적되었음.

2) 소라미,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공적 진상조사의 필요성 및 법제화 방안에 대한 검토」,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2권 제2호, 2021. 8. p.160.

- 그간 국회와 학계, 아동관련 단체의 주도로 2014년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서현보고서>, 2017년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은비보고서>가 작성된 바 있으나, 모두 민간단체들이 조사를 주도한 것으로 충분한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었고, 국가 차원의 공적 조사와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³⁾.
- 정부 또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여러 차례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나, 근본적으로 아동학대사망사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사와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 마련에는 현실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아동학대대응체계 강화방안 등 >

☐ 「포용국가 아동정책」(’19.5월) - 아동학대 관련 내용 -

- (대응체계) 학대조사 공공화로 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 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전문 사례관리 기관으로 개편
- (전수조사) 만3세 전수조사 연 1회 실시(’19~)
- (징계권) 민법 제915조에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 용어 변경 또는 한계 설정

☐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20.7월)

- (정보연계) 지역별 정보연계협의체 구성하여 학교 등 위기가동 정보 공유
- (대응체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 지자체 배치 ’22→ ’21년 단축
- (보호) 학대 발생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는 즉각분리제도 도입
- (단계별 실효성) 대응인력 출입범위 확대, 사례관리 거부 시 제재규정 신설 등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월)

- (초기대응) 교육 확대·지침 마련 등 초기대응의 전문성 및 이행력 강화

3) 정선욱·강지영·김진숙·이세원·정선영, 「아동학대사망사건 분석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제42권 제3호, 2022, pp.210~211: <이서현보고서>는 남인순의원을 위원장으로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 관련 단체, 법학과와 변호사, 사건 발생 지역의 시민단체 대표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유치원, 학교, 진료 의사 등 24곳의 기관과 개인을 조사하였고, <은비보고서>는 남인순의원·김삼화의원·금태섭의원을 위원장으로 법률 및 변호사 관련 단체, 미혼모 및 한부모 관련 단체, 입양인 관련 단체,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여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조사를 진행하였음.

- (대응인력) 전담공무원 등 대응인력의 조속한 배치, 업무여건 개선(조사차량 등)
- (분리보호) 심터 확충, 일시보호체계 강화로 차질 없는 즉각분리제도 시행
- (인식개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 대국민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전개
- (입양) 입양기관 관리감독 강화 등 입양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

□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21.8월)

- (발굴) 위기아동 발굴·사례관리체계 내실화, 영유아 특화 발굴로 신고 전 위기 포착
- (대응체계) 진술부담 완화를 위한 협업, 분리보호 시 학습권 보장,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강화 등 아동 관점의 대응체계 보완
- (인식개선) 보편적 부모교육 제공 및 '긍정 양육 129원칙' 확산
- (인프라) 인력(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요원, 학대예방경찰관-APO) 및 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심터 등) 지속 확충

□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23.4월)

- (예방) 2세 이하 아동 집중 조사, 정보 연계 강화 등 촘촘한 위기아동 발굴 추진, 조기개입체계 구축 및 신고활성화
- (대응) 아동학대대응인력 전문성 제고, 아동 안전 중심의 대응체계 보완
- (사후관리) 학대피해아동 회복지원 서비스(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등) 강화 등

□ 특히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법령, 관행, 제도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경우가 많은바⁴⁾,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심층분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으로, 이를 통해 마련된 개선책은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점에서 제정안과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 국가 수준의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분석하고, 그를 토대로 관련 법령·제도 등 개선, 책임 있는 국가기관 등에 대한 시정 조치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등이 그 이행을 확인·점검하도록 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음.

4)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으로 가정폭력, 경제문제(무직, 빈곤, 감당 못할 부채), 범죄경력, 불안정한 혼인 형태, 정신병력(우울증, 자해 및 자살 시도, 알코올 문제), 불우한 어린 시절(피학대경험, 가정폭력, 빈곤 등), 지지체계 부족 등이 지적됨(강현아 외 5,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유형 및 특성」, 『한국아동복지학』 제68호, 2019).

-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 「아동법」에서 ‘아동사망조사파트너(Child Death Review Partner: CDRP)’를 두어 아동사망 관련 사항을 조사·분석하게 하며, 미국의 경우 각 주에서 주(州)법으로 아동사망의 발생 및 원인 등을 검토하는 ‘아동사망검토팀/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방 정부는 이 운영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아동학대 사망분석 추진 이후, 아동사망검토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음.

< 해외 사례 >

1 영국

- 「아동법」에서 “아동사망조사파트너”(Child Death Review Partner: CDRP)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함. “아동사망조사파트너”는 아동사망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역할 수행
- 아동 사망 고지 등이 있는 경우, ①아동사망개관패널(CDOP)에서 관련 조사 및 정보수집 후 관련 전문가들의 ②아동사망조사회의(CDRM)를 개최, 이후 ③아동사망조사파트너(CDRP, ‘17~)의 독립적인 검토를 거쳐 ④전국 아동사망 데이터베이스(NCMD, ‘19~)에 입력하는 방식
 - 아동사망이 발생한 경우 ① ‘아동사망개관패널’ 등에 통지(notification)
 - ‘아동사망개관패널’은, 사망 원인 등에 따라 아동의 생전 또는 사망 후의 정보를 가장 적합한 기관이 보고양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요청
 - 보고양식 완성 후 ② 지역의 아동사망조사회의가 소집되는데 해당 아동의 생전 또는 사후 사항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분석서 초안 작성
 - ③ 아동사망조사파트너의 검토를 거친 최종 분석서는 ④‘전국 아동사망데이터베이스’에 입력
- 아동사망조사파트너의 업무: 해당 지역 내 아동 복지 및 공중보건·안전과 관련하여 아동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적 의무가 이행되었는지 확인함으로써 관련한 조치의 적절성을 판단
- 아동사망조사파트너의 권한: 정보요청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아동사망검토파트너는 ‘정보요청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강제집행(injunction)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2 미국

- 아동사망조사에 대해서는 각 주에서 주법으로 아동사망의 발생 및 원인 등을 검토하는 ‘아동사망검토팀/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방정부는 이 운영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
- (예시)메릴랜드 주법 (제5-701조~제5-709조)
 - ‘주(州)아동사망검토팀’(State Child Fatality Review Team)을 두고 있는데 최소 25명.

해당 팀은 주(州)법무장관, 의료심사책임자, 인력부장관, 보건부장관, 주(州)교육감, 주(州)경찰책임자 또는 그 지정자로 구성

- 주(州)아동사망검토팀의 목적: 아동사망의 원인 및 발생에 대한 분석, 아동사망 방지를 위한 아동사망검토팀의 대응, 아동사망 방지를 위한 법률, 정책, 실무에 있어서의 개선권고
- 주(州)아동사망검토팀의 주 업무:
 - 주(州)내의 아동 사망의 원인 및 발생에 대한 연간 통계 작성
 - 지역 아동사망검토팀(local team)으로부터의 보고서 검토
 - 지역팀과 협력하여 ‘아동사망자조사’에 대한 기준(protocol) 개발
- (비공개 원칙) 아동사망조사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공받은 정보에서 특정 아동의 신원 정보 등을 공개하지 않음. 위반 시 500달러 이하의 민사벌칙금(civil penalty) 부과
- 주 내 각 카운티에 기관복합(multiagency)형태의 ‘(지역)아동사망검토팀’(local child fatality review team)을 두도록 규정. ‘(지역)아동사망검토팀’ 역시 의료, 교육, 경찰, 학대대응프로그램의 책임자, 교육부 관계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
- ‘(지역)아동사망검토팀’은 사망 아동에 대한 보육 정보, 의료서비스제공자가 관리하던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
- 주(州)아동사망검토팀 및 ‘(지역)아동사망검토팀’의 회의는 아동사망에 대한 개별 사례를 검토하는 경우 비공개로 함.

3 일 본

- (조직구성) 후생노동성 사회복지심의위원회 아동부회 산하 학대검증위원회
 - * 아동가정청 출범에 따라 후생노동성 업무 이관('23.4)
- 각 도도부현 등(70곳, 정령시·아동상담소설치시 포함)에도 별도 위원회* 조직 설치(69개소, '21년 기준)
 -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하부조직(31개소), 사회복지심의위원회 하부조직(30개소), 단독위원회(7개소), 기타(1개소)
- (인력구성) 약 3명('21년 기준) ※행정인력 등 제외
 - * 대학교수 및 연구원,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시설 관계자, 아동위원, 민간위원 등
- (분석대상) 아동학대 사망, 중상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통보 무관)
 - 각 도도부현마다 자체적으로 사건 선정 후 사망분석 추진하고, 후생노동성에서 매년 주제선정 및 취합하여 보고서 발간('05년~, 총 19차 진행)
 - * ▲신생아사망('14년), ▲시설 입소 경험이 있는 아동사망('16년), ▲일반사례 판단 후 사망('17년), ▲10대 임신사망('18년), ▲방임사망('21년), ▲자녀살해 후 극단적 선택('23년)
- (분석시기) 매년 1회(후생노동성 종합분석 보고서 발간)
 - 각 도도부현마다 전향적 또는 후향적 분석 다양하게 추진
 - * 사망 직후 파악된 정보에 한해 분석 및 공표(히로시마시) vs 재판 이후 분석 및 공표(사가현)
 - ** 필요 시, 후생노동성에서도 자체적으로 사건분석 추진
- (분석기간) 3개월~22개월/ 평균 13개월('21년 기준)
- (보고서 공개 여부) 보고서 공개(회의록 등 비공개)

* 자료 : 보건복지부

- 한편, 금번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6709호)과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7118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그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 김선민의원안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으로 하고 있는 반면, 강선우의원안과 전진숙의원안에서는 각각 아동사망 사건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법 적용 대상을 어떻게 할지 문제와 함께,

아동 사망사건 조사·분석 거버넌스 체계와 관련하여 김선민의원안에서는 합의제 행정기관 성격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조사·분석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강선우의원안에서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 소속의 국가아동사망 검토위원회가, 전진숙의원안에서는 심의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아동사망조사위원회가 각각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보다 효과적인 거버넌스 체계 설계와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김선민의원안은 합의제 행정기관 성격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아동학대사망사건 관련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조사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보다 원활한 입법을 위해서는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및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의 사전협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그 외, 우리 위원회는 금번 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국무총리 소속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서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유족 등에 대한 면담, 형사사법정보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2024. 12. 5.)하였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제정안과 같이 국무총리 소속 하에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유사 사례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준용하여, 연 평균 57억 800만 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있을 것으로 추계하였음.
- 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사망사건의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하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DD20193)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고발 및 수사의뢰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에 아동복지·아동학대 등 아동 관련 분야의 전문가(대학 교수 등) 포함 필요성, 권고 이행내역과 불이행 사유의 국회 보고 기간 및 횟수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임.

< 관계 부처(기관) 및 단체 의견 >

기관명	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사망사건의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하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DD20193)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 ○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고발 및 수사의뢰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에 아동복지·아동학대 등 아동 관련 분야의 전문가(대학교수 등) 포함 필요성, 권고 이행내역과 불이행 사유의 국회 보고 기간 및 횟수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
행정안전부	○ 행정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5조 등에 따라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설치 가능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행정위원회의 설치 요건으로 기존 행정기관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안의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기능(아동학대 예방·방지 기능)과 중복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행정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 중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활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
인사혁신처	○ 제17조(공무원 등의 파견) 관련, 파견은 기관 범위 밖에서 인력을 활용하는 예외적인 제도로서, 기관 간 상호 동의를 전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파견 및 파견자 선발은 기관의 균형적·효율적 인력 활용, 파견자의 인사상 불이익 방지, 기관의 인사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일방의 파견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기관 고유의 인사권한 침해 등 인사운영상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는 측면 고려할 필요
국무조정실	○ 아동학대 사망사건 조사·분석은 다수 부처의 정책에 대한 조정·종합기능보다는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조사·분석기구(위원회 등)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 ○ 또한, 현행 「아동복지법」 제10조제4항에 아동정책과 관련한 특정한 사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무총리 소속의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기보다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특별위원회를 활용하여 아동학대사망사건이라는 특정 사안을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
법무부	○ 위원회의 사건 조사·분석 및 대책 수립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위원회의 조사와 형사상 ‘수사’의 관계가 불분명해질 우려, 중복조사 및 2차 피해 우려, 수사의 밀행성 및 재판의 공정성 침해 등 우려로 신중 검토 필요

2.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제명 및 목적·정의(안 제1장)

- 제정안은 제명을 「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조사·분석 및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하면서, 총칙에서 이 법의 목적과 ‘아동’, ‘아동학대’, ‘아동학대관련범죄’ 및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정의를 각각 규정함.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아동학대 예방·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학대사망사건을 명확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아동학대 예방·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3. “아동학대관련범죄”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를 말한다.
4. “아동학대사망사건”이란 아동이 아동학대관련범죄 피해를 입어 살해되었거나, 사망에 이르렀거나, 또는 아동학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건(2018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중에서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말한다.

- 먼저, 제명 중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 ‘조사’의 구체적 의미에 대하여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의 ‘조사’ 방법 중 하나인 진술 청취,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다수 준용되고 있고(안 제20조제4항 및 제5항), ‘아동학대사망사건’에는 ‘아동학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건’(안 제2조제4호)도 포함되는바, 수사기관의 수사 완료 후에도 아동의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조사’가 시행되는 경우 형사상 ‘수사’와의 명확한 관계설정도 필요할 수 있겠음.
-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에서는 위원회의 ‘조사’와 형사상 ‘수사’의 관계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고, 사건관계인에 대한 중복조사 및 2차 피해 우려도 있으며, 수사의 밀행성 등이 저해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임.
- 다음, 제정안에서는 아동학대사망사건을 “아동이 아동학대관련범죄 피해를 입어 살해되었거나, 사망에 이르렀거나, 또는 아동학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건(2018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사건) 중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아동학대관련범죄나 아동학대

로 인한 아동사망 사건이 제정안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기를 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도 필요해 보임.

<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망사건 발생건수 >

(단위: 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아동학대 사망사건 발생건수	42	43	40	50	44

* 아동학대 사망사건 발생건수: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현황 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인지된 사건까지 포함된 건수

자료: 보건복지부(「2023 아동학대 주요통계」)

- 관련하여,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6709호) 및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7118호)에서는 각각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아동의 모든 사망’을 규율대상으로 하면서, 그 조사시기도 한정하지 않고 있음.

나.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안 제2장)

- 안 제2장(제3조~제18조)에서는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조사·분석을 통하여 아동학대사망사건의 발생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을 수립·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그 외, 위원회의 업무 및 구성, 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 사무국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제2장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3조(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의 설치)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조사·분석을 통하여 아동학대사망사건의 발생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을 수립·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대상 사건 선정
2.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조사·분석
3. 아동학대사망사건과 관련한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의 대응 등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
4. 아동학대사망사건 발생과 관련된 법령, 제도, 정책, 조직, 관행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아동학대 예방·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
5.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고발 및 수사의뢰
6. 제4호의 개선방안 및 대책 이행계획 확인·점검
7. 제2호에 따른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
8.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 중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1명 이상이어야 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법의학 전공자 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관련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수사·정보수집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아동·아동학대·아동복지·아동인권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5. 아동·아동학대·아동복지·아동인권 등 관련 단체·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③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각각 임명하고,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⑤ 위원의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국무총리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⑥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최초로 조사개시 결정을 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비상임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1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위원회 업무를 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피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제11조(위원의 겸직 및 정치활동금지) ①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4. 아동학대사망사건의 발생에 직접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학대사망사건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사망 아동 또는 조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아동학대사망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아동학대사망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직원 중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사무국 직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의 위임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를 적용한다.

⑥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⑦ 사무국의 조직·운영 및 사무국 직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사무국의 존속기간) 사무국은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제17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먼저, 제정안(제3조)에서는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조사·분석을 통하여 아동학대사망사건의 발생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을 수립·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안 제3조).
- 제정안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은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나 분석 업무는 보건복지부 외에도 법무부, 경찰 등 여러 부처(청)의 업무와 관련됨에 따른 것으로 보임.
-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대통령 소속의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아동사망조사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바, 보다 효과적인 조사·분석 거버넌스 체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임.
- 그 외, 위원회의 명칭과 관련하여 제정안의 명칭이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도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조사’를 규정하는 경우 형사상 ‘수사’와의 관계와 관련 중복 문제가 제시될 수 있어 ‘조사’를 포함할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겠음.

□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에서는 아동학대 사망사건 조사·분석은 다수 부처의 정책에 대한 조정·종합기능보다는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조사·분석기구(위원회 등)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현행 「아동복지법」 제10조제4항에 아동정책과 관련한 특정한 사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무총리 소속의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기보다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특별위원회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사망사건이라는 특정 사안을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임.

□ 다음, 제정안(제5조)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은 아동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다고 인정된 법률가, 의료인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유사 입법례⁵⁾ 등을

5)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재해·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해양·선박·잠수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화학물질 및 독성, 예방의학, 직업환경의학 등 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교육계·언론계·종교계 또는 문화예술계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진실규명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8.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관련 단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9. 수사·정보수집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고려하여 아동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한 학계 인사(교수 등) 추가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위원 수도 7명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음. 관련하여, 강선우의원안에서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전진숙의원안에서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 그 외, ‘아동·아동학대·아동복지·아동인권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의 경우 매우 짧은 기간이라도 아동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모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동안 관련 업무 종사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될 필요도 있겠음.

□ 다음, 제정안(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최초로 조사개시 결정을 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이 규정은 이 법의 적용이 아동학대사망사건이 2018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사건을 대상으로 함에 따른 것이나, 아동학대사망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고려할 때, 상시기구로 두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음.

- 참고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⁶⁾에 따르면, 업무가 계속성·상시성이 있는 경우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행정위원회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음.
- 한편, 제정안(제17조)에서는 위원장이 국가기관등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사혁신처는 이에 대하여 파견은 기관 범위 밖에서 인력을 활용하는 예외적인 제도로서, 기관 간 상호 동의를 전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파견 및 파견자 선발은 기관의 균형적·효율적 인력 활용, 파견자의 인사상 불이익 방지, 기관의 인사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방의 파견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기관 고유의 인사권한 침해 등 인사운영상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 위원회의 조사·청문회 및 결과보고서 작성(안 제3장)

- 제3장제1절(제19조~제21조)은 조사개시 및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의결로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조사방법으로서 조사대상자·참고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출석요구, 현장 실지조사 등의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고발·수사의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 제2절(제22조~제27조)은 청문회에 관한 사항으로, 청문회 실시에 관한 일반적 입법례인 증인출석 요구, 출석의무, 선서, 증인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제3절(제28조)은 조사·분석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후 6개월 이내에 조사·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

제3장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의 조사 및 청문회

제1절 조사

제19조(조사의 개시) ① 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여 의결로 조사개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0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에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제4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사실·정보 조회

5. 제4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 학대 현장 등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

6.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구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를 요청받은 개인 또는 기관은 지체 없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및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 제130조제1항, 제131조 및 제133조를 준용 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 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⑦ 위원회로부터 조사사항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정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 통신사실에 관한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⑩ 위원회가 제9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3, 제13조의5 및 제15조의2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제21조(고발 및 수사의뢰)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요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청문회

제22조(청문회의 실시)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①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① 위원회로부터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

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5조(증인 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제26조(증인 등의 보호) ① 증인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인·참고인이 방송이나 사진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를 들어 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녹음·녹화 또는 방송이나 사진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감정인·참고인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제27조(검증) ①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아동학대사망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조사·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제28조(조사·분석 결과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적인 조사·분석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외에 대통령에게 별도의 조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③ 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또는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사망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직·간접적인 원인과 관계된 사실정보
2. 아동학대사망사건의 발생과 관련된 법령, 제도, 정책, 조직, 관행 등에 대한 개선 조치
3. 아동학대사망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책임 있는 국가기관등에 대한 시정 등 조치
4. 아동학대 예방·근절을 위한 아동학대 대응·아동보호 체계에 대한 대책 수립 관련 조치
5.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한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6. 위원회의 활동기간 만료일 이후의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을 위한 상설기구 설치 등 계획

④ 위원회는 보고서와 위원회 활동내역을 정리한 백서를 각각 발간·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사망 아동, 조사대상자, 참고인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등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절 조사 관련 사항임.

□ 먼저, 진상조사를 위한 독립적 위원회 등을 규율하는 유사 입법례에서는 피해자 및 그 유족 등의 신청을 받는 절차가 있음에도, 제정안에서의 위원회는 그러한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바, 아동학대사망사건

관련자의 신청 관련 절차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특히 안 제21조제4항에서 위원회가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후 수사기관에서 취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을 고려할 때 ‘신청’ 절차를 둘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9조(진실규명 신청) ①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17392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조사신청) ① 제22조에 따른 신청(이하 “조사신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조사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조사신청) ① 제24조에 따른 신청(이하 “조사신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조사위원회는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조사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조사방법은 유사 입법례와 비교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이
나, 진술 청취 및 자료·물건 제출과 관련하여 다수의 「형사소송
법」 규정을 준용⁷⁾하고 있는바, ‘수사’와의 관계 설정과 관련하여
법무부 등 관련 부처 간 사전 협의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7)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제112조(업무상 비밀과 압수),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131조(주의사항),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147조(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제149조(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3조(진실규명 조사방법) ①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4.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조사 수행을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구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를 요청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가 제1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⑤ · ⑥ (생략)

⑦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조사기록, 재판기록 및 그 밖의 기록(이하 “조사기록등”이라 한다)의 열람, 등사, 사본의 제출요구 등(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통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7조 및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구의 완료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실

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의 범죄사실
- ⑧ 새로운 단서 또는 증거가 제출된 경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⑨ 위원회가 제7항에 따라 조사기록등의 열람등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절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앞서 본 유사 입법례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임.

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①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가 이 법에 따른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등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訊問)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일이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① 위원회로부터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게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생략)

⑧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거부이유는 소명9(疏明)하여야 한다.

④ 16세 미만의 사람이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등의 제출) 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회가 제1항 단서의 소명을 수락하

제25조(증인 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제26조(증인 등의 보호) ① 증인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인·참고인이 방송이나 사진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를 들어 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녹음·녹화 또는 방송이나 사진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감정인·참고인은 청문회에서	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폐회 중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의 성명(聲明)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가 제2항의 성명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제7조(증인·감정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증언·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僞證)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9조(증인의 보호) ①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②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참고인이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녹화·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	---

한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제27조(검증) ①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아동학대사망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④ (생략) 제10조(검증) ① 위원회는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檢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검증실시통보서(이하 이 조에서 “통보서”라 한다)를 발부한다. 이 경우 그 통보서는 늦어도 검증실시일 3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③ 통보서에는 검증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이 제1항의 검증을 거절할 경우에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⑤ 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 제3절 조사·분석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등은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분석이 관련 법령, 제도 등에 대한 개선 조치, 아동보호 체계에 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자료로 제공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취지로 보임. 다만, 책임 있는 국가기관등에 대한 시정 등 조치(제28조제3항제3호)가 이미 완료된 수사나 재판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수 있겠음.

□ 그 외, 제정안(제28조)에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고서 외에 ‘대통령에게 별도의 조사보고를 할 수 있다’(안 제28조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조사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법률 제·개정 및 법안 심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임.

라. 국가기관등의 이행실태 확인·점검(안 제4장)

- 제4장(제29조)은 위원회의 조사결과로 인한 권고 등에 대한 국가기관등의 이행실태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조치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수용 여부 및 이행계획을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함. 아울러, 조치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6개월 내에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보고서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제4장 국가기관등의 이행실태 확인·점검

제29조(이행실태 확인·점검 등) ① 제2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은 3개월 이내에 그 수용여부 및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2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6개월 이내에 그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후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내역이나 이행상황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에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국회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고서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정안의 목적이 아동학대사망사건 발생원인 규명을 통한 아동학대근절대책 마련에 있음을 고려할 때, 조사결과에 따라 국가기관 등

에 조치권고 등을 실시하고, 이의 이행결과 등을 점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3개월 이내에 그 수용 여부 및 이행 계획을 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것 외에도, 극회를 대상으로 6개월 이내에 그 이행 내역과 불이행 사유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면서, 이후 이행상황은 반기별로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행 상황 점검 절차를 완화할 필요도 있어 보임.

마. 기타(보칙, 벌칙)

- 제정안은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비밀준수의무, 자격사칭의 금지, 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운송비·여비 등, 공개에 따른 책임 면제 등 7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보칙’(안 제5장)과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한 ‘벌칙’(안 제6장)을 규정함.

제5장 보칙

제30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등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비밀준수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위원회의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했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사망 아동·조

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운송비·여비 등) 이 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여비·일당·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제36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장 벌칙

제37조(벌칙) ①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하지 아니한 증인
4.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인
5.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감정인
6.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7.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망 아동,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2. 제32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정보의 조회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회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하려 한 사람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 안 제38조제1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바, 다른 입법례에서는 이러한 행위들의 위법성을 동일하게 보아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 안 제37조제2항제6호의 ‘자’는 ‘사람’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음.

「환경보건법」 제3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60조, 제61조제1항 또는 제2항(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문 의 처

02)6788-5500